

1 배제기준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

아래 각 환경목표와 관련된 공통 배제기준 검토를 위해 환경영향위험도(Risk)와 환경위험대응도(Readiness)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오.

1. 온실가스 감축

● [환경영향위험도(Risk) 확인]

사업자의 해당 경제활동은 다음의 위험 발생가능성(likelihood)과 위험수준(impact)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오.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발생가능성 (Likelihood)	H	3	가. 해당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화석연료의 제조, 신규 채굴, 저장, 운송과 관련되어 있음 (여기 해당시 다른 항목 검토없이 배제)	
	M	2	나. 위 (가)에는 해당하지 않으나, 해당 경제활동을 위해 에너지 사용설비를 운영하거나 공정배출을 야기하는 설비 운영함	
	L	1	다.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원 없거나 미미함	
위험 수준 (Impact)	H	3	가. 해당 경제활동에서 사용하는 주 연료로 고탄소 에너지원인 석탄, 석유가 사용됨	
	M	2	나. 해당 경제활동에서 주 연료로 석탄/유류를 제외한 천연가스, 부생가스, 폐기물 기반 연료 등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됨	
	L	1	다.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	

● [환경위험대응도(Readiness) 확인]

사업자가 위험 경감을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대책(Mitigation)과 관리체계(Capacity)에 대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오.

(단, 환경영향위험도(Risk) 결과 합계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만 검토 및 체크하며, 합계점수가 5점 미만인 경우에는 검토 불필요)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저감/완화 대책 (Mitigation)	H	3	가. 연료/전력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관리계획이 있고, 재생에너지 사용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 수립계획이 있음	
	M	2	나. 연료/전력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관리계획 있음	
	L	1	다. 연료/전력 사용량 관리, 온실가스 측정, 배출량 감축계획이나 대책 모두 부재	
관리체계	H	3	가. 국내외 공인 규격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, 에너지경영시스템	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역량 (Capacity)			인증(ISO 등)을 보유하고 있음(투자한 모회사가 보유해도 해당)	
	M	2	나.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업무 담당 조직이나 인력 보유	
	L	1	다. 관리시스템 또는 에너지/온실가스 조직이나 인력 모두 부재	

2. 기후변화 적응

● [환경영향위험도(Risk) 확인]

사업자의 해당 경제활동은 다음의 위험 발생가능성(likelihood)과 위험수준(impact)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십시오.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발생가능성 (Likelihood)	H	3	가. 해당 경제활동이 아래 해당 분야 기후리스크 목록 중 3개 이상의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	
	M	2	나. 해당 경제활동이 아래 해당 분야 기후리스크 목록 중 1개 이상의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	
	L	1	다. 해당 경제활동이 아래 해당 분야 기후리스크 목록 중 해당사항 없음	✓
위험 수준 (Impact)	H	3	가. 최소 1개 이상의 리스크 항목 관련 돌이킬 수 없거나 심각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	
	M	2	나. 최소 1개 이상의 리스크 항목 관련 상당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, 현행 대응체계 하에서 관리 가능함	
	L	1	다. 해당되는 리스크 항목이 없거나, 해당 리스크 항목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함	✓

● [환경위험대응도(Readiness) 확인]

사업자가 위험 경감을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대책(Mitigation)과 관리체계(Capacity)에 대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십시오.

(단, 환경영향위험도(Risk) 결과 합계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만 검토 및 체크하며, 합계점수가 5점 미만인 경우에는 검토 불필요)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저감/완화 대책 (Mitigation)	H	3	가. 해당 리스크 전부를 포함하는 대응/조치계획이 있으며, 자체 리스크 예측평가 시스템이 존재함	
	M	2	나. 해당 리스크 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/조치계획이 있음	
	L	1	다. 해당 리스크에 대한 대응/조치계획이 모두 부재	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관리체계/역량 (Capacity)	H	3	가. 국내외 공인 규격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(ISO 등)을 보유하고 있음(투자한 모회사가 보유해도 해당)	
	M	2	나.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업무 담당 조직이나 인력 보유	
	L	1	다. 관리시스템 또는 환경관리 업무담당 조직이나 인력 모두 부재	

※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목표(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제외)의 18대 분야 중

1. 산업, 발전·에너지 분야 경제활동은 ③국토·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
2. 수송 분야 경제활동은 ③국토·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
3. 도시·건물 분야 경제활동은 ①물관리(9개), ③국토·연안(13개)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
4. 농·축산업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(9개), ②산림·생태계(18개), ④농수산(14개)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
5.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·활용 분야 경제활동은 ③국토·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
6. 임업 분야 경제활동은 ②산림·생태계 부문 18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
7.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목표 경제활동은 ①물관리(9개), ②산림·생태계(18개), ③국토·연안(13개)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
8. 순환경제로의 전환 목표 경제활동은 ③국토·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
9. 오염 방지 및 관리 목표 경제활동은 ③국토·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
10.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경제활동은 ①물관리(9개), ②산림·생태계(18개), ④농수산(14개)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
11. 연구개발, ICT 분야 경제활동은 ①물관리(9개), ②산림·생태계(18개), ③국토·연안(13개), ④농수산(14개)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

<국가 기후리스크 목록(5대 부문 65개 리스크) 중 일부(건강 부문은 제외)>1)

① 물관리 부문(9개)		해당 여부
홍수	폭우로 인한 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증가	(예시) ×
	강우량 변동성 증가로 인한 댐과 하천의 기반시설 안전성 저하	(예시) ×
가뭄	기후변화로 인한 물공급(생활/공업/농업용수) 능력 저하	(예시) ×
	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	(예시) ×
	가뭄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심화	(예시) ×
	기후변화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 운영능력 저하	(예시) ×
수질·생태계	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인한 하천/호소 수질 악화	(예시) 0
	폭우로 인한 하천/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	(예시) 0
	기온 상승, 가뭄, 폭우, 태풍으로 인한 수생생물 건강성 훼손	(예시) 0
② 산림·생태계 부문(18개)		해당 여부
생물종	기후변화로 인한 식물(종, 개체수, 군락, 식물계절, 분포) 서식지 변화	(예시) ×
	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종, 개체수 및 서식지 변화	(예시) ×
	기후변화로 인한 외래생물 증가	(예시) ×
	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종 및 희귀/보호종 감소	(예시) ×
	극한기상으로 인한 생물종 및 개체수 변화	(예시) ×
생물서식지	기후변화로 인한 아고산대(종, 생육, 분포) 서식지 변화	(예시) ×
	기후변화로 인한 담수 생물의 개체수 및 서식지 변화	(예시) 0
	극한기상에 의한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변화	(예시) 0
	기후변화로 인한 토양 생태계 변화	(예시) 0
	기후변화 및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도서 생태계 변화	(예시) 0
	기후변화로 인한 습지 생태계 변화	(예시) ×
	극한기상으로 인한 연안 및 하구역, 해양생태계 변화	(예시) ×
	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및 하구생태계 변화	(예시) ×
산림	극한 기상으로 인한 산림재해(산불, 산사태 등) 발생 및 피해 증가	(예시) ×
	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성장과 탄소 흡수량 변화	(예시) ×
	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피해	(예시) ×
	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 계류수의 변화	(예시) 0
	극한기상으로 인한 산림병해충 피해 증가	(예시) 0

③ 국토·연안 부문(13개)		해당 여부
정주공간	폭우로 인한 도심지 주택 또는 저지대 침수 피해 증가	(예시) ×
	폭우, 태풍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위험성 증가	(예시) ×
	극한기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증가	(예시) ×
	극한기상으로 인한 노후 건축물 파손 증가	(예시) ×
	극한기상으로 인한 쇠퇴도시 및 기반시설 노후도시 등 취약지역 피해 증가	(예시) ×
기반시설	극한기상으로 인한 육상교통(철도, 도로) 시설 파손 및 성능 저하	(예시) ×
	극한기상으로 인한 전기/통신시설 파손 및 성능 저하	(예시) 0
	극한기상으로 인한 그린인프라 피해위험 증가	(예시) 0
연안	폭우, 해일, 파랑, 해수면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 및 범람 위험 증가	(예시) 0
	파랑 및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백사장, 사구, 갯벌 침식 및 식생 피해 위험 증가	(예시) 0
	극한기상으로 인한 항만시설, 공항시설의 파손 및 운영 정지, 사고위험 증가	(예시) ×
	태풍, 해일, 강풍, 파랑,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연안 시설물 파손, 기능저하 및 사고위험 증가	(예시) ×
	해수면상승에 따른 염수 침투 및 해안선 후퇴에 따른 연안지역 피해 증가	(예시) ×
④ 농수산 부문(14개)		해당 여부
식량자원	극한기상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변동 및 품질저하	(예시) ×
	기후변화(기온 상승, 강수량 변화 등)로 인한 작물 재배적지, 작부체계 변화	(예시) ×
	폭염 및 기온상승으로 인한 가축생산성 저하	(예시) ×
	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 피해 및 양식환경 변화	(예시) ×
	해수온 상승 및 해양산성화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	(예시) ×
생산환경 기반	극한기상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 피해 증가	(예시) ×
	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 및 잡초 증가로 농작물 피해 증가	(예시) ×
	해수온 상승 및 한파, 폭염 등으로 인한 가축, 수산질병 증가 및 안전성 저하	(예시) ×
	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토양유실, 농업용수 수질오염	(예시) 0
	가뭄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한 농업 수리시설의 수자원공급 안정성 저하	(예시) 0
	폭우 강도 및 빈도 증가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홍수 대응력 저하	(예시) ×
	해양 기상환경변화로 인한 조업환경 변화 및 조업 일수 감소	(예시) 0
	기후변화로 인한 수입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성 저하	(예시) ×
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물가의 불확실성 증가	(예시) ×	

3.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

● [환경영향위험도(Risk) 확인]

사업자의 해당 경제활동은 다음의 위험 발생가능성(likelihood)과 위험수준(impact)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십시오.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발생가능성 (Likelihood)	H	3	가. 해당 경제활동이 수자원 보호지역(상수원/지하수 보전, 샘물보전구역)에 입지하면서, 산업폐수가 발생하거나 하천/호수/해수를 취수하여 사용함	
	M	2	나. 해당 경제활동이 수자원 보호지역에 입지하지 않으면서, 산업폐수가 발생하거나 하천/호수/해수를 취수하여 사용함	
	L	1	다. 해당 경제활동이 수자원 보호지역과 관련이 없으며, 산업 폐수의 발생과 용수 사용량이 없거나 미미함	✓
위험 수준 (Impact)	H	3	가. 해당 경제활동에서 방지시설 등이 운영되더라도, 관리소홀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수질 악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나 수자원 고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	
	M	2	나.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해 수질, 수자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일반적인 법규 준수 환경 하에서 방지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관리 가능함	
	L	1	다.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한 폐수 발생이나 용수 사용이 없거나 수질 영향과 수자원 고갈 관련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	✓

● [환경위험대응도(Readiness) 확인]

사업자가 위험 경감을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대책(Mitigation)과 관리체계(Capacity)에 대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십시오.

(단, 환경영향위험도(Risk) 결과 합계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만 검토 및 체크하며, 합계점수가 5점 미만인 경우에는 검토 불필요)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저감/완화 대책 (Mitigation)	H	3	가. 관련 법규에 따른 방지시설, 처리시설 운영계획이 있으며, 환경영향평가*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 및 정부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됨	
	M	2	나. 관련 법규에 따른 방지시설, 처리시설 운영계획이 있음	
	L	1	다. 방지시설이나 처리시설 운영계획 모두 부재	
관리체계 역량 (Capacity)	H	3	가. 국내외 공인 규격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(ISO 등)을 보유하고 있음(투자한 모회사가 보유해도 해당)	
	M	2	나.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업무 담당 조직이나 인력 보유	
	L	1	다. 관리시스템 또는 환경관리 업무담당 조직이나 인력 모두 부재	

*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, 「지하수법」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, 「해양이용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, 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환경성평가 또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

4. 순환경제로의 전환

● [환경영향위험도(Risk) 확인]

사업자의 해당 경제활동은 다음의 위험 발생가능성(likelihood)과 위험수준(impact)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오.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발생가능성 (Likelihood)	H	3	가. 사업기간 동안 사업장 폐기물(생활폐기물 외)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, 희소자원(희유금속)이나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사용함	✓
	M	2	나. 사업기간 동안 사업장 폐기물(생활폐기물 외)이 지속적으로 발생	
	L	1	다.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 외 폐기물 발생이 없거나 미미함	
위험 수준 (Impact)	H	3	가. 발생한 폐기물을 에너지 회수 없이 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함	✓
	M	2	나. 발생한 폐기물을 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되, 에너지 회수 등의 방식으로 처리함	
	L	1	다. 발생한 폐기물을 주로 재활용함	

● [환경위험대응도(Readiness) 확인]

사업자가 위험 경감을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대책(Mitigation)과 관리체계(Capacity)에 대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오.

(단, 환경영향위험도(Risk) 결과 합계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만 검토 및 체크하며, 합계점수가 5점 미만인 경우에는 검토 불필요)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저감/완화 대책 (Mitigation)	H	3	가.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과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(예, 제조활동의 경우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제품 디자인 채택)	✓
	M	2	나.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계획이 있음	
	L	1	다. 폐기물 억제나 재활용 계획이 모두 부재	
관리체계/ 역량 (Capacity)	H	3	가. 국내외 공인 규격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(ISO 등)을 보유하고 있음(투자한 모회사가 보유해도 해당)	✓
	M	2	나.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업무 담당 조직이나 인력 보유	
	L	1	다. 관리시스템 또는 환경관리 업무담당 조직이나 인력 모두 부재	

5. 오염 방지 및 관리

● [환경영향위험도(Risk) 확인]

사업자의 해당 경제활동은 다음의 위험 발생가능성(likelihood)과 위험수준(impact)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오.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발생가능성 (Likelihood)	H	3	가. 해당 경제활동이 발전·에너지 또는 산업 분야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오염물질(대기오염물질/유해화학물질/해양오염물질/오존층파괴물질/잔류성오염물질, 토양오염물질 등)이 발생	
	M	2	나.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발생하나, 수송 / 도시·건물 / 농·축산업 등 기타 분야에 해당	
	L	1	다.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원이 없거나 미미함	✓
위험 수준 (Impact)	H	3	가. 방지시설이나 장비가 운영되더라도 관리 소홀, 부주의, 재해 등으로 인해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함	
	M	2	나. 상당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통상적인 법규 준수 환경 하에서 방지시설 설치 운영이나 관리를 통해 관리 가능함	
	L	1	다.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피해 수준이 없거나 미미함	✓

● [환경위험대응도(Readiness) 확인]

사업자가 위험 경감을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대책(Mitigation)과 관리체계(Capacity)에 대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오.

(단, 환경영향위험도(Risk) 결과 합계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만 검토 및 체크하며, 합계점수가 5점 미만인 경우에는 검토 불필요)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저감/완화 대책 (Mitigation)	H	3	가.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과 관련한 방지/저감시설, 처리시설 운영 계획이 있고, 프로젝트 기획·설계 단계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있음	
	M	2	나.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과 관련한 방지시설, 처리시설 운영 계획 있음	
	L	1	다.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과 관련한 방지시설이나 처리시설 운영계획 모두 부재	
관리체계/ 역량 (Capacity)	H	3	가. 국내외 공인 규격에 따라 환경경영시스템 인증(ISO 등)을 보유하고 있음(투자한 모회사가 보유해도 해당)	
	M	2	나.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업무 담당 조직이나 인력 보유	
	L	1	다. 관리시스템 또는 환경관리 업무담당 조직이나 인력 모두 부재	

6. 생물다양성 보전

● [환경영향위험도(Risk) 확인]

사업자의 해당 경제활동은 다음의 위험 발생가능성(likelihood)과 위험수준(impact)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오.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발생가능성 (Likelihood)	H	3	가. 해당 경제활동이 직접 생태계 보호 민감 지역에서 이루어짐 (산림, 습지, 하천, 갯벌, 해양 등)	
	M	2	나. 주 원재료/연료 공급망 등 밸류체인상에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부하 발생 가능(산림 벌채, 토지 매립, 취수 등)	
	L	1	다. 해당 경제활동이 직/간접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부하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함	✓
위험 수준 (Impact)	H	3	가. 방지시설이나, 사전 회피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, 관리소홀, 재해 등으로 인해 중대한 생태계 파괴 영향이 발생 가능함	
	M	2	나. 일반적인 국내 법규 준수 환경 하에서 사전 회피 대책이나 방지 시설 운영을 통해 관리 가능함	
	L	1	다. 생태계 파괴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	✓

● [환경위험대응도(Readiness) 확인]

사업자가 위험 경감을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대책(Mitigation)과 관리체계(Capacity)에 대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오.

(단, 환경영향위험도(Risk) 결과 합계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만 검토 및 체크하며, 합계점수가 5점 미만인 경우에는 검토 불필요)

검토 항목				체크 (V)
구분	등급	점수	판단 기준	
저감/완화 대책 (Mitigation)	H	3	가. 해당 경제활동이 아래 생태계 보전지역에서 수행되지 않고 사업장 뿐만 아니라 주 원재료 공급망 등 간접적인 생태계 영향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거나, 관련 법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*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 및 정부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됨	
	M	2	나. 아래 생태계 보전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, 보전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생태계 영향에 대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있음	
	L	1	다. 산림, 습지, 하천, 갯벌, 해양 등 생태계 보호 민감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짐에도 생태계 영향에 대한 관리대책 부재	
관리체계/ 역량 (Capacity)	H	3	가. 국내외 공인 규격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(ISO 등)을 보유하고 있음(투자한 모회사가 보유해도 해당)	
	M	2	나.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업무 담당 조직이나 인력 보유	
	L	1	다. 관리시스템 또는 환경관리 업무담당 조직이나 인력 모두 부재	

*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, 「지하수법」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, 「해양이용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, 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환경성평가 또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

< 생태계 보전지역 목록 >

▶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역

1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
2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
3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4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
5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
6.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
 - 가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 - 나.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
 - 다.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
7.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
8. 「습지보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
9. 「수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
10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·고시된 지역
11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

▶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역

1.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
2. 해양의 지형·지질·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
3.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·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
4.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
5. 산호초·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
6.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
7.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아래 해역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
 - △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
 - △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(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)
 - △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
 - △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(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)
 - △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(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)
 - △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(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)

▶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

1.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
2.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
3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
4.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
5.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
6.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

▶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